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피해와 언론조정중재제도

김 민 중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 론

인류 역사상 인터넷만큼 성공스토리(sucess story)를 엮어내고 있는 ‘사건’도 드물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는 29억 2,300만 명 이상이고 전체 세계인구 중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한국의 인터넷이용인구는 지난 2014년 3월 기준 3,476만 2,000명으로 집계되어 총 인구 대비 인터넷 이용자의 비율은 81.1%이고 인터넷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12.4% 정도라고 한다). 인터넷은 언제 어디서나 거의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현대사회의 거대한 도구’(a vast tool in today’s society)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하면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무수한 정보가 마우스의 스크롤과 손가락의 클릭만으로 누구에게나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과도 의사를 교환할 수 있다. 인터넷이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고 있다. 정보의 습득이나 뉴스의 전달¹⁾은 물론, 일하는 방식,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1) 『2012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모바일기기를 통하여 기사를 이용하는 비율은 2011년 19.5%에서 2012년 47.4%로 무려 27.9%나 증가한 반면, 종이신문을 통한 기사구독은 44.6%에서 40.9%로 오히려 하락했고, 특히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신문기사 이용 비율은 20대 이하에서는 86.8%에 달한다고 한다.

개인의 거래생활, 사회의 구조까지도 인터넷을 통하여 통제로 변화되고 있고, 장차 통신·방송·컴퓨팅·센서망이 모두 융합되는 이른바 ‘미래 인터넷’(future internet)의 시대가 전개되면 인터넷이 사회생활 전반을 더욱 지배할 전망이다.

인터넷은 어쩌면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인지도 모른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신비의 요술램프와 같은 인터넷이 인간의 사회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만큼 인터넷이 가져온 부작용도 크다. 인터넷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분쟁이나 갈등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난다. 인터넷의 새로운 기술적 진보와 함께 새로운 문제가 날로 야기되기도 한다. 인터넷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인터넷신문이나 언론사닷컴, 포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과 같은 인터넷매체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매체로 인하여 명예훼손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대한 침해와 같은 언론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책임은 물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책임이나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등을 통해서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꾀하기가 어렵다.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피해는 그 특성상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구제를 필요로 하므로 형사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만으로는 만족스런 해결을 도모하기가 곤란하다.

다행히 인터넷매체를 통하여 언론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고 직접적인 구제제도로서 언론조정중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2005년에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터넷매체로서는 인터넷신문이 맨 처음 언론조정중재의 대상에 포함된 이후 2009년 언론중재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인터넷신문 이외에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이 다시 언론조정중재제도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피해에 대하여 조정이나 중재 등과 같은 보다 전문적이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고 있다.